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645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드보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2. 2.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0147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0. ‘C은 원고에게 11,698,510원 및 그 중 7,549,358원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상속등기 등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F과 자녀들인 피고, C이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2.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여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C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0년경부터 망인과 모친을 부양하여 왔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 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즉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여수시 대 241㎡
2. 전라남도 여수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조적구조 철근콘크리
트슬래브지붕 단층 농어가주택 84.3㎡ ㎡.

- 1)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원인을 '진정명의회복'으로 기재하였으나, 주문과 같이 설했다.